## 자본주의국가형법에 규제된 형법규범의 시간적효력과 그 반동성

신 명 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법규범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닙니다.》(《감일성전집》제51권 289폐지)

법규범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사회관계가 변하고 계급투쟁의 내용이 변하면 달라 지게 된다.

법규범이 달라지면 이미 있던 법규범의 효력은 상실되고 새로 제정된 법규범이 효력을 가지게 된다.

형법규범의 시간적효력은 형법규범이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형법규범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효력을 가지는가 하는것이다.

자본주의국가형법은 부르죠아독재를 실현하며 자본주의국가를 미화분식하는데 유리 하게 형법규범의 시간적효력을 규제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형법은 모두 형법전에 형법규범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소멸시기를 규정하고있다.

우선 자본주의국가형법은 형법규범의 효력발생시기를 두가지로 규정하고있다.

하나는 공포의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것이다. 대륙법계국가들중 소수의 국가들이 이 형식을 취하고있으며 법규의 발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며 법규의 공포의 날에 효력이 발 생하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준 혹은 공포한 날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륙법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형식을 취하고있다. 이 방식은 법규의 발포일과 시행일이 일치하지 않으며 법전자체에 규정되여있는 공포의 시행일이나 칙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날을 효력발생일로 하고있는것이다.

또한 자본주의국가형법은 형법규범의 효력상실시기를 두가지로 규정하고있다.

그것은 새법이 발포되면 낡은 법이 폐지되여야 한다는것을 법률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것과 새 법이 발포되면 낡은 법이 스스로 효력을 상실하는것이다.

자본주의국가형법에 규제된 시간적효력의 반동성은 무엇보다먼저 특정한 시기와 환경, 대상과 조건에 맞게 설정된 특별형법을 일반형법에 앞서 적용하면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데 있다.

자본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형법을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으로 구분하고있다. 일반형법은 일반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형법(각국의 형법전)이며 특별형법은 일정한 부류의 사람(군인, 공무원 등)이나 특정한 시기와 대상, 장소, 범죄들에만 적용되는 형법이다. 일반형법을 제외한 단행형법들이 특별형법에 속한다. 각국의 군사형법전들과 절도법, 뢰물방지법, 전시법 등이 특별형법에 속한다.

특별형법은 존재형식상 형법전에서 독립되여있으며 규제내용이 더 세부적이고 광범하며 효력기간내에 감행된 범죄에 대하여서는 그 법이 효력을 상실한 다음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하나의 범죄가 일반형법과 특별형법에 모두 규제되여있을 때 자본주의국가들은 특별

형법을 일반형법에 앞서 먼저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자본주의국가형법의 규제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더욱 강화하려는 부르죠아지의 의사와 요구를 집중적으로 반영한것이다. 그것은 특수한 조건과 환경, 대상의 특성에 맞게 발포된특별형법이 일반적으로 일반형법에 비하여 범죄를 더욱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있을뿐아니라 형벌의 도수를 더 높이 설정하고있기때문이다.

부르죠아지와 그 하수인들은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략탈정책의 강화로 자본주의국가가 심각한 위기와 진통을 겪을 때 마다 《비상상태》나 《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온갖 파쑈적악법들을 발포하면서 근로인민대 중에 대한 형사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으며 위험한 상태가 끝난 다음에도 《범죄자》들 을 《전시법》에 걸어 가혹하게 처형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전시법》들은 일반형법전에서 범죄로 하지 않던 행위들까지도 범죄시하고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형벌을 형사재판 도 없이 즉시 적용하도록 하면서 반전세력들과 진보적인사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일반형법보다 특별형법을 우선시하면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것은 자본주의국가들 특히 파쑈국가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였다. 이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발포되고 적용된 일본의 특별형법들만을 보고서도 잘 알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도 일본에는 1907년에 제정된 형법(여러번 수정되였지만 지금 현재에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있다.)이 존재하고있었으며 효력을 가지고있었다. 당시 일제는 《내란죄》와 《외환죄》를 비롯한 많은 범죄들을 이 형법전에 기초하여 처형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 형법전은 《조정을 문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진 폭동》을 《내란죄》로, 《폭동, 협박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것만을 《소요죄》로, 《폭동음모》만을 《내란준비죄》로 규정한것을 비롯하여 일부 조문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데서 반동통치배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있었다. 이로부터 공산당을 비롯한 진보적인 세력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사회에 대한 파쑈화를 더욱 철저히 강행하기 위하여 1925년 《치안유지법》(1928년과 1941년 두번에 걸쳐 수정됨)을 발포하였다.

《치안유지법》은 제1조에서 《국체(국가의 정치체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 인하는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를 범죄로 하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일제는 특별형법인 《치안유지법》과 《전시형사특별법》의 효력을 일반형법전보다 우위에 놓으면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치안유지법》과 《전시형사특별법》에 규제된 《국체의 변혁》과 《국가정치를 변동, 문란》시키는것,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은 자본주의제도를 유지고수하는데 장애로 되는 모든행위들을 가장 철저히 탄압할수 있도록 규제한 가장 반동적인 법이였다. 이 법에 따른다면 부르죠아지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그 어떠한 행위도 모두 탄압할수 있었다.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 《치안유지법》과 《전시형사특별법》을 비롯한 특별형법들에 기초하여 일본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파쑈통치제도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를 반대하는 진보적인 세력들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와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동경》하거나 《지지》하는 사람들을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각종 형벌에 처하면서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1929년부터 1933년에 이르는 기간에만 하여도 일본에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들은 무려 5만여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에도 일제는 《파괴활동방지법》(1952년), 《파업제한법》(1953년), 《교원의 정치활동종사금지법》(1954년), 《의회주변에서의 시위금지법》(1960년)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발포하면서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선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이 법들에 규정되여있는 형벌은 일반적으로 형법전에 규정되여있던 구체적인 범죄명에 해당한 형벌보다 더 높았으며 범죄명도 더 많았고 세부적이였다.

일본뿐아니라 거의 모든 자본주의국가들이 형법전이외의 특별형법들을 마구 제정공 포하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자본주의국가형법에 규제된 시간적효력의 반동성은 다음으로 형법변경시의 효력을 자본주의사회를 미화분식할수 있게 규제하고있는데 있다.

형법변경시의 효력은 형법의 변경으로 일정한 행위의 범죄성과 가벌성이 달라진 경우 어느 시기의 형법에 효력을 부여할것인가 하는것이다. 형법의 소급력이라고도 한다.

자본주의국가들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불소급원칙을 기본으로 하면 서도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소급하는 원칙을 내세우고있으며 형법전에 이를 여 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규정하고있다.

일본은 형법전 제6조에서 《범죄후의 법률로 형벌에 변경이 있는 때 비교적 경하게 처벌하는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이것은 불소급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낡은 법의 형벌이 경하면 낡은 법을 적용하며 새법의 형벌이 경하면 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는것을 규정한것이다.

자본주의국가형법리론과 그를 합리화하고있는 어용형법학자들은 불소급원칙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 리유는 불소급의 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내용의 하나이며 형법의소급적용이《법의 안전성》을 해치고《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기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은 죄형법정주의는 사전에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대중이 그것을 알고 준수할것을 요구하는데 행위이후에 시행된 형법으로 시행이전의 행위를 처벌하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를 모르고있다가 무고하게 처형받는것으로 된다고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앞으로 범죄로 처형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포와 불안으로 자유롭게 행동할수 없게 되며 이것은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보호하는데서도 불리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행위수행이후에 채택된 형법전으로는 그 이전에 감행된 범죄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

자본주의국가형법과 그 어용학자들은 형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불소급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례외적인 경우에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서 소급할수도 있으며 이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것을 내용으로 하기때문에 《죄형법정주의의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불소급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형벌의 경중이 있는 경우《범죄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원칙》에서 경한 형벌을 규정한 형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자본주의국가형법이 《국민의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하는 자본주의국가형법과 이를 합리화하고있는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의 주장은 자본주의국가형법의 《인도주의》를 제창하기 위한 기만에 불과하다.

형법의 변경시 낡은 형법과 새 형법에서 범죄의 성립과 형벌의 경중에서 차이가 있

는 경우 어느 형법을 적용할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범죄자의 리익》인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의 리익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형사립법권과 집행권, 재판권을 장악한 지배계급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부르죠아지이며 자본주의국가형법의 탄압대상으로 되고있는 《범죄자》는 그 대부분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형법전에 범죄와 형벌을 규제하고있는 계급도 국가주권과 생산수 단을 장악한 소수의 부르죠아지이며 발포된 형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선택하고 집행하 는 계급도 부르죠아지와 그들의 리익을 대변하고있는 하수인들이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와 억압, 착취와 략탈을 생리적본성으로 하고있는 부르죠아 지가 저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범죄》를 감행한 《범죄자》인 근로인민대중의 《리 익》을 보장해주는 원칙에서 형법의 변경시 그들에게 유리한 형법을 적용한다고 하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형법의 변경시 범죄확정과 형벌량정에서 부르죠아지나 그 하수인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경한 형벌을 적용하는것은 그것이 변화된 조건과 환경에서 저들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거나 위험으로 되지 않으며 위험으로 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다고 본데 있으며 해당 형법이 규제하고있던 립법적기초와 조건이 없어진데 있다.

형법의 변경시 부르죠아지가 불소급원칙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새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있는 경우 새 형법을 적용하는것은 낡은 법에 규제되여있던 범죄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에게 위험으로 되지 않기때문이지 그것이 《범죄자의 리익》에 유리해서인것은 결코 아니다. 부르죠아지와 그 하수인들이 형벌의 경중이 있는 경우 경한 형벌을 적용하는것도 《범죄자의 리익》을 위해서인것이 아니라해당 시기의 형법에 규정된 범죄가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죠아지의 리익을 침해하는데 있어서 위험성이 적은데 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지와 그 하수인들은 자본주의국가형법의 《인도주의》를 제창하려는데로부터 《범죄자에게 유리한 원칙》이라는 위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있다.

자본주의국가형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준다고 하는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사회에서 형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부르죠아독재의 수단이다. 자본주의국가형법이 보호하고 옹호하는 자유와 권리란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한 극소수 특권계층에 속하는 부르죠아지의 자유와 권리일뿐이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파쑈화되여가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진정한 인권옹호란 절대로 있을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국가형법에 규제된 형법규범의 시간적효력의 반동성을 잘 알고 반제투 쟁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을 앞당겨와야 할것이다.